

매매계약 일반조건

(상품 및 서비스 매매에 모두 적용가능)

1. 계약의 당사자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본 일반 계약 조건(“본 계약 조건”)은 그것이 언급되거나 인용된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다른 계약, 제안, 견적(이하 “합의서”)와 결합하여 본 계약(“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어서 통합되도록 한다. 이하 “본 계약”이라 함은 본 계약 조건의 조항들을 담고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2. 일반사항

2.1. 매도인과 매수인이 제시한 모든 조건 및 약속은 본 계약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당사자” 혹은 합쳐서 “당사자들”이라 칭한다.

2.2. 매도인에게 제출된 매수인의 주문(“주문”)에 대한 수락은 본 계약에 포함된 계약 조건에 대한 매수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매수인이 적시에 본 계약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거나, 본 계약에 따라 인도된 상품을 수령하면, 매수인이 주문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도인은 주문을 수락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고, 또한 (i) 매도인이 주문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 했으며 3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이 주문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전제로, 매도인이 주문 확인서를 발급한 때 (ii) 매수인의 주문 수령 후 상품을 선적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주문을 수락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매도인은 해당 주문에 구속되며 해당 주문은 합의서를 구성한다.

3. 가격

본 계약 하에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매수인이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그 가격에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재 및 생산 비용이 상승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양측이 가격 조정을 위해 신의와 성실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

4. 세금

본 계약에 명시된 매도인 측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이에 대한 다른 언급이 있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한 부가가치세, 판매세, 사용세, 소비세, 관세 혹은 기타 세금, 비용, 또는 부담금 (규제 비용 및 부담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다. 준거세법에 명시적으로 매도인이 이와 같은 세금을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매수인이 이러한 세금을 부담한다.

5. 대금지급

5.1. 본 계약 하에 판매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개별 결제 기일 정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수령하거나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금지급은 [한국 원화]로 한다.

5.2.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을 넘겨 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매도인은 기타 다른 구제수단과 함께, 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 주문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선적하지 않은 상품의 선적을 보류할 수 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기한을 넘겨 지급을 지체한 날로부터 연이율 12퍼센트의 이자를 일 단위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6. 인도

6.1. 본 계약의 상품 인도에서 시간은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매도인은 합의서에 명시된 수량과 시한을 준수하여 상품을 인도해야 한다. 매도인은 상품이 양호하고 안전한 상태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품을 적절하게 포장하고 지켜야 한다.

6.2. 합의서에 제시된 인도날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상품을 인도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 상품을 수령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적 사고(하기 정의됨)가 발생한 경우, 인도 및 수령 날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사라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 혹은 양 당사자들이 다른 인도 날짜에 합의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불가항력적 사고란 계약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사고나 사건으로, 천재지변, 어떠한 정부 당국의 행위(그 유효 여부와 관계없음), 화재, 홍수, 태풍, 폭발, 폭동, 자연재해, 전쟁,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의 노동 관련 문제(직장폐쇄, 파업, 혹은 태업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전력, 자재, 노동 장비 또는 교통수단을 구할 수 없는 상황, 혹은 법원 명령이나 판결 등을 의미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3. 협의된 인도 장소로의 상품 인도가 매도인(직원, 판매사원 등을 포함한 매도인의 대표자를 포함)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지연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상 손해배상의 예정액 또는 대한민국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6.4.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은 본 계약에 따른 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7. 소유권

7.1. 인도나 위험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당 상품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합의된 가격의 금액(일체의 발생한 이자를 포함)을 지불할 때까지 본 계약에 따른 상품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7.2.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매수인은 수탁자 자격으로 상품을 점유하며, 매수인은

- i. 상품을 적절히 관리하며 상품에 대한 어떠한 파손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며,
- ii. 상품에 대해서 어떠한 요금의 부과나 유치권, 저당권 등 지출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하고 상품이 매도인의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하며,
- iii. 매도인이 요구할 때마다 매도인에게 해당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3. 매도인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도 회수 및 전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

의에 의하여 가지게 되는 상품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및 그 점유와 관련된 권리를 상실한다. 상품의 회수는 매도인이 서면으로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해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매도인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인은 일정 기간 동안 매수인이 해당 상품을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7.4. 제7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移轉)되기 전(前) 이라도 기한 내에 매수인이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수량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은 상품을 분할하여 인도할 수 있다.

9. 검사 및 품질 관리

9.1. 매수인은 상품이 인도되면 즉각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매도인의 귀책에 의한 상품 수량의 부족, 부적합, 혹은 파손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매수인은 해당 상품을 수령하고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이와 같은 수입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인도한 상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매수인은 상품의 부족, 부적합, 혹은 파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9.2.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상품의 부족, 부적합, 혹은 파손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은 이 통지에 대해 회신을 할 수 있는 10영업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이 시행한 수입검사 결과에 따른 상품의 부족이나 부적합, 혹은 파손 및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면, 매도인에게는 자신의 비용과 부담으로 매수인으로부터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상품, 적합한 상품 또는 파손되지 않은 상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입검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이를 통지할 경우, 양 당사자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에 따라

협약하여 한다.

10. 보증

10.1. 매도인은 매매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상품이 매수인에게 제공된 혹은 매수인이 제공한 상품 명세서 및 도면, 샘플 및 기술서에 부합하며, 상품으로서 판매가 가능하고, 양질의 자재 및 기술이 사용되었고, 어떠한 결함도 없음을 보장 및 보증한다.

10.2. 상품이 10.1 조항에 명시된 보증사항에 부합하지 않고, 매수인이 상품에 대한 결함을 발견한지 7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이를 통지할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당 상품을 새 상품으로 교환해주거나, 본 상품의 구매 당시 지불된 액수를 환불해 줄 수 있다.

10.3. 10.2. 조항에 따라 환불을 할 경우,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매수인은 매수인의 비용 부담으로 환불하는 해당 상품을 파기하거나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할 경우 해당 상품은 매도인의 재산이 된다.

11. 지적 재산

11.1.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본 계약 이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하기 정의됨)은 이미 그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의 절대적 재산이 되며, 본 계약의 어떠한 사항도 상품의 혹은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11.2. 매수인은 본 계약에 의해 매도인이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다.

11.3.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i) 저작권, 특허권, 데이터베이스 및 상표, 디자인, 노하우, 그리고 기밀정보(등록 여부와 관계없음)등에 대한 권리와, (ii) 이 모든 권리들에 대한 등록 신청, 그리고 등록 신청할 권리, 그리고 (iii)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 및 세계 모든 지

역에 존재하는 이에 상응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보호조치를 의미한다.

12. 배상 및 책임의 제한

12.1. 매도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결함 있는 상품으로 인한 매수인의 사망, 개인적 부상 혹은 재산상 손해(상품 자체의 결함을 제외함)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하기 제시된 상황에서는 매도인은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 (i) 매도인이 결함 있는 상품을 제공했을 당시의 과학적 혹은 기술적 지식 수준으로서는 그러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 (ii) 매도인이 결함 있는 상품을 제공했을 당시 적용되는 특정한 준거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했거나,
- (iii) 원자재나 부속품의 경우, 그 결함이 해당 원자재 혹은 부속품이 사용되었거나 설치된 상품의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디자인이나 지시 사항에 기인한 경우.

그러나 매도인이 상품 결함의 존재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결함이 있는 상품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12.2. 12.1. 조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결함 있는 상품으로 인해 야기된 (i) 매수인 혹은 (ii) 매수인으로부터 영업재산을 구매한 제3자의 영업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불이행

상품 구매 가격의 전부 지급(액수제한 없이 전부 지급되어야 함)을 포함한 본 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 지급불능, 파산, 채권자들에 대한 재산 신탁(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혹은 매수인 사업의 해산, 청산, 정리해산은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매도인은 추가적인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매도인이 계속해서 납품을 하기로 선택했다고 하여 불이행에 대한 면제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매도인은 준거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권리 및 구제 수단을 여전히 보유한다. 만약 매

도인이 본 계약에 따른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3자의 도움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매수인은 회수 비용과 위 금원의 지불 기한으로부터 연이율 12퍼센트의 이자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14. 독점 정보 및 비공개

14.1. 본 계약 기간 및 그 이후 3년 동안,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상대 당사자로부터 받은 기밀 정보(하기 정의됨)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공개하거나 기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각 당사자는 이러한 기밀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적어도 자신이 보유하는 독점 정보나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울이는 수준의 주의(적어도 합리적인 주의 수준을 충족해야 함)를 기울여 자신의 직원이나 대리인, 자문위원 그리고 다른 대표자들이 상대방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거나 권한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각 당사자는 이러한 기밀 정보가 권한 없이 사용되거나 공개된 것을 발견하면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14.2. 어느 당사자의 “기밀 정보”란 (i) 유형으로 공개되었으며 “기밀” 혹은 “독점”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ii) 무형으로 공개되었으며 공개 당시 기밀 혹은 독점 정보로 확인되고, 이러한 공개 7일 내에 정보 수신 당사자에게 기밀 혹은 독점 정보임을 알리는 서면 통지가 있었거나, (iii) 합리적인 동종 업계의 종사자가 본 정보가 기밀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개된 각 당사자의 일부 혹은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15. 해지

15.1. 만약 당사자들 중 일방이 계약상 중대한 위반을 하고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 해지 시 즉각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5.2. 15.1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본 계약이 해지된 결과 자신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16. 계약상 지위의 양도

매도인 혹은 매수인은 모두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 혹은 부담을 양도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효이다.

17.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같은 법에 의해 해석되며 계약 당사자들의 분쟁에 대한 관할은 [한국] 법원의 전속 관할에 따른다.

18.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은 매도인과 매수인 측의 적법한 대표자들에 의해 체결된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9. 조건의 분리

만약 본 계약의 어떠한 문구나 구절, 혹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조항의 유효성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